

## 제13장 녹색 경제

### 제1절 일반 원칙 및 목적

#### 제13.1조 정의

이 장의 목적상,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,

**청정에너지**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저히 줄이는 저배출 또는 무배출 기술이나, 순 배출량 제로 달성을 및 양 당사국의 공유된 기후 목표와 합치되게 효율성과 보존을 통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해법 등으로부터 온실가스 저배출이나 무배출 에너지를 생성하는 모든 에너지원을 말한다.

**신에너지**란 신기술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되는 에너지를 말한다. 그 범위는 기술 진보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. 그리고

**재생에너지**란 재생 가능 자원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말한다.

#### 제13.2조 목적

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.

- 가. 저탄소, 자원 효율성 그리고 기후 탄력적 개발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청정·재생에너지 및 녹색 산업과 같은 신성장동력을 배양함으로써 녹색 및 기후 탄력적 경제를 증진하는 것

- 나. 공동의 번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색 무역 및 녹색 투자와 같은 상호 관  
심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
- 다. 기후 행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대화와 지식, 우수 관행, 전문지식 및 정  
보의 공유를 증진하고, 정책 의사소통 및 경험 공유를 증대하며, 각 당사  
국의 국가 상황을 고려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의 계획 및  
전략을 모색하는 것, 그리고
- 라. 에너지 전환을 공동으로 증진하고 에너지 효율 및 청정·재생에너지에서  
의 기술 공유를 향상하는 것

### 제13.3조

#### 원칙

- 1. 양 당사국은 「1972년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 선언」, 「1992년 환경과 개발에  
관한 리우 선언」, 「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의제 21」, 「2002년 지속가능발전에  
관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」, 「2012년 리우+20 의 결과문서 “우리가 원하는 미  
래”」, 「2015년 우리 세계의 전환: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」, 「기후 변화  
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」(UNFCCC), 파리협정 그리고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 
그 밖의 관련된 다자 환경 협정을 지지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한다.
- 2. 양 당사국은 개발을 우선순위로 지지하는 것, 모두를 위한 혜택, 혁신 주도적 개  
발,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결과 지향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한다.
- 3. 양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 보호 수준 및 국가적 우선순위를 수립하고 자국의 우  
선순위와 역량에 따라 환경 조치를 채택, 수정, 운영 및 집행하는 각 당사국의 주권적  
권리를 인정한다.
- 4. 양 당사국은 환경 기준을 보호무역주의의 위장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  
절함을 인정한다. 양 당사국은 또한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환경 기준의 보

호 수준을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.

5. 양 당사국은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녹색 성장 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 이니셔티브를 수행한다.

제2절  
협력 분야

제13.4조  
녹색 무역

1.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이 포용적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위한 동력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한다.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녹색 무역이, 환경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녹색 산업, 부문 및 시장의 개발을 증진하고 강화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녹색 경제의 중심임을 인정한다.

2. 양 당사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적에 기여하고 이 목적이 양 당사국의 무역 관계에 통합되고 반영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제 무역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.

3. 양 당사국은 녹색 무역의 발전을 위하여 협업하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시회, 포럼 및 박람회와 같은 홍보 활동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할 수 있고, 녹색 제품 및 서비스 무역을 증진할 수 있다.

제13.5조  
녹색 투자

1. 양 당사국은 투자가 생산성, 포용적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요 동인이며, 녹색 투자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 경제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.
2. 양 당사국은 투자 협력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개선하고 녹색 경제, 순환 경제 및 녹색 기술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양 당사국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정 에너지 및 환경 보호, 생태 환경, 생태 농업, 녹색 관광 그리고 저배출 및 무배출 기술과 같은 녹색 산업 및 녹색 서비스에서의 녹색 투자 협력과 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3. 양 당사국은 특히 회의, 세미나 및 포럼의 개최를 통하여 녹색 투자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.
4. 양 당사국은 양국 간 녹색 투자 협력 프로젝트를 증진할 수 있다.
5. 양 당사국은 정부 기관, 지방 정부, 산업 협회, 상공회의소, 금융 기관 및 기업과 같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접촉을 강화하고 녹색 투자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며 그들의 협력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더욱 미래지향적이 되도록 보장할 것을 장려할 수 있다.

### 제13.6조 순환경제

1. 양 당사국은 「2015년 우리 세계의 전환: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」의 「제12차 지속가능발전목표」가 순환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. 양 당사국은 녹색 소비 및 생산과 저탄소 삶의 방식을 장려하고 증진할 것이다.
2. 양 당사국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,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,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며, 더욱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품, 재료 및 자원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경제에 유지하고 생산 및 소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2차 재료로서 가치 사슬로 환원하는 순환경제 접근 방식을 장려한다.

### 제13.7조

#### 녹색 기술

1. 양 당사국은 녹색 기술이 녹색 경제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보호,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동력임을 인정한다.
2.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촉진하며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  - 가. 녹색 기술의 혁신 및 통합
  - 나. 녹색 기술 장비의 연구개발
  - 다. 과학자, 연구자,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
  - 라. 녹색 기술을 위한 세미나, 심포지엄, 컨퍼런스 및 그 밖의 과학·기술 회의의 공동 주최
  - 마. 공동의 과학·기술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, 제품 및 서비스의 상업화에서의 협력, 그리고
  - 바.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모든 협력 분야

### 제13.8조

#### 녹색 표준

1. 양 당사국은 표준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협력이 제도 및 절차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무역에 대한 장벽을 축소시킬 수 있고, 이는 잘 작동하는 녹색 경제를 지원함을 인정한다. 양 당사국은 녹색 경제에 관한 표준, 기술

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, 채택, 적용 및 유지에 대한 정보 교환과 투명성이 국제 협력에 중요함을 또한 인정한다.

2.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한 분야에서 의사소통과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.

- 가. 적절한 경우, 녹색 경제와 관련된 국제 표준의 채택 및 개발 장려
- 나. 국제 표준을 포함하여, 양 당사국의 상호 관심 분야에서 표준 개발 모색, 그리고
- 다. 무역 장벽을 축소시키고 녹색 무역 및 투자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녹색 경제와 관련된 표준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대화와 협력 증진

3. 양 당사국은 중복 평가를 감소시키고 무역 원활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녹색 경제와 관련된 적합성 평가 결과의 상호 인정에 관한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.

4. 양 당사국은 국제 표준 수립 시 조율을 장려할 수 있고 표준 간 일관성을 증대 시킬 수 있다.

### 제13.9조

#### 청정 · 재생에너지

1. 양 당사국은 신에너지시스템의 건설 가속화와 청정 · 재생에너지 소비 비율 증대의 중요성을 인정한다.

2. 양 당사국은 청정 · 재생에너지 기술에서의 지식 공유를 증진할 수 있고, 저탄소 경제 발전과 녹색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진전시킬 수 있다.

3. 양 당사국은 수력, 태양열 발전, 수소 및 그 파생물, 바이오 에너지,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력 발전, 풍력,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,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리고 전기차와 같

은 청정·재생에너지 산업 및 기술에서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.

### 제13.10조 디지털 및 녹색 발전을 위한 조정된 전환

1. 양 당사국은 지능형 전력망과 신생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성 개선, 디지털 기술과 녹색 및 저탄소 산업의 심층적 통합 그리고 디지털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기술의 적용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.
2.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촉진하며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  - 가. 데이터 센터와 5G 같은 디지털 산업의 녹색 및 저탄소 발전
  - 나. 연구개발의 디지털 전환
  - 다. 공동의 디지털 및 녹색 기술 확대
  - 라. 디지털 및 녹색 통합 적용 시나리오 확장, 그리고
  - 마.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모든 협력 분야

### 제3절 협력 형태

#### 제13.11조 협력

1. 양 당사국은 제2절에 따른 협력 분야에서 제13.2조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

적절하게 협력을 증진하고 촉진하며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2. 제1항에 따른 협력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가. 공동 연구개발

나. 경험 및 우수 관행의 교환

다. 인적자원 훈련

라. 기술 지원, 그리고

마.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모든 형태의 협력

#### 제4절

#### 이행 메커니즘

#### 제13.12조

#### 연락처

1.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연락처를 지정한다.

2.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, 다음의 연락처를 지정한다.

가. 한국의 경우,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, 그리고

나. 말레이시아의 경우, 투자통상산업부 또는 그 승계기관

**제13.13조**  
**분쟁해결의 비적용**

1. 제17장(분쟁해결)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.
2. 양 당사국은 이 장의 해석, 이행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한다.